

#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승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21.

발의자 : 김승희 · 金成泰 · 염동열  
송희경 · 박맹우 · 김도읍  
박덕흠 · 안상수 · 이현재  
김종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스템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,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·2급인 사람과 제3급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등급제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(1~3급)과 경증(4~6급)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반영한 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.

한편,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음에

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급권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,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·지급결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'장애등급' 용어를 '장애정도'로 변경하고,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 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조·제9조·제10조·제15조·제27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9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”을 “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애등급을”을 각각 “장애정도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10 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각각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제1호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”를 “제4 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장애등급” 을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

<p>④ ~ ⑨ (생 략)</p> <p>⑩ 제2항에 따른 <u>장애등급</u> 재심사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④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----- <u>장애정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) ① ~ ③ (생 략)</p>	<p>제10조(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
<p>1.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·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<u>장애등급</u>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애정도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2. (생 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)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.</p>	<p>제15조(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 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</p>	<p>3.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</p>

<p>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4. <u>장애등급</u>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27조(과태료)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·재산 및 <u>장애등급</u>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u>위에</u>----- ----</p> <p>4. <u>장애정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27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<u>장애정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